한국의 집단소송제

Class actions in Korea

법무법인 Hannuri Law 한누리

이 소책자에 담긴 내용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동의 없이 전재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머리말

한국에서 집단소송제는 2005년 증권분야에 국한하여 처음 도입되었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된지 만 10년이 되어가는 2014년 10월 현재 총 7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중 1건이 화해로 종결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7건의 집단소송 중 2건의 집단소송이 유수의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아직 집단소송이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총 7건 중 6건이 2010년 이후에 제기되는 등 집단소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집단소송제를 증권분야에서 독과점 분야에까지 확대하는 입법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집단소송제를 독과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보호, 환경분야에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보유출 등 집단적 분쟁이 늘어나면서 이제 집단소송제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누리는 7건의 집단소송 중 총 4건의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그 중 2건에 관하여 소송허가결정을 받아 내는 등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하는 대표적인 로펌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누리의 소속 변호사들은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나 개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집단소송제는 한국의 민사소송법체계 및 실무환경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이 가이드북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집단소송제 현황과 전망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집단소송이란?

집단소송이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집단의 전체구성원들을 대표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송의 효과를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독특한 민사소송절차로서 대표당사자 소송이라고도 불리운다. 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는 원고가 되기 위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지만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이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빠지고자 하는 행위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참여한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집단소송제는 언제 도입이 되었나?

한국의 집단소송제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서 증권분야에 한하여 도입되었는데 이 법은 2005. 1. 1.부터 발효되었다.

왜 집단소송이 도입되었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다[1].

-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직접적인 목적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하는 것이다. 집단적 피해의 특성상,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는 전체 피해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여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를 제도적으로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집단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소송은 증권의 거래와 관련한 집단적 피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그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강제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집단소송제의 도입 당시 어떠한 논란이 있었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오랜 논의결과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한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반대입장에서는 선의의 기업이 집단소송에 연루되기만 하는 것으로도 도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원고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악의에 의해 제소당한 기업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국민경제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집단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더라도 변호사 수임료가 보상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은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김치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2002. 2. 제1면 참조

논란 끝에 제정된 한국의 집단소송법은 소송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소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어떠한 청구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원인에 제한이 없는 반면, 한국은 법 제3조에 규정된 아래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선의의 투자자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누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이들이 보유한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일 것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통될 것
-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 수단일 것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누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집단소송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법제3조 제2항). 따라서 집단소송의 피고는 주권상장법인이 되며,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국의 집단소송은 opt-in 인가 아니면 opt-out인가?

한국의 집단소송은 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 대표당사자가 전체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면, 배제를 원하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법원에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해당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외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나 소송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2조 제5호).

Opt-Out의 반대개념으로 Opt-In이 있다. 적극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를 희망한 경우에 한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Opt-In은 개별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의 특성상 개별 투자자의 피해는 전체 피해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집단소송제에서 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5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구성원들로부터 명시적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미치는 것이어서, 법원이 대표당사자 아닌 구성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소송절차를 감독할 필요성이 크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의 소송허가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가능한가?

소송허가결정 및 소송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4항, 제17조 제1항).

당초 법무부가 만든 집단소송법시안이나 1998년 제출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에는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포함되었다. 이로 인하여 허가결정의 확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화스마트10 ELS와 관련된 집단소송사건의 경우 소송허가신청이 2010. 12. 30. 제기되었고

불허가결정은 그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2. 5. 1. 내려졌으며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으나 그로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2013. 5. 31 항고가 기각되었고 현재 재항고사건이 계류 중이다.

씨모텍 집단소송사건의 경우에도 2011. 10. 13. 소송허가신청이 제기되었으나 1심법원의 결정은 2년 가까이 경과한 2013. 9. 27. 내려졌으며 현재 항고심사건이 계류 중인 실정이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는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법 제5조 제2항).

또한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지 않았어야 하지만(법 제11조 제3항 본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제1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1조 제3항 단서).

한국의 집단소송법은 피고측 소송대리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원고측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한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한국 집단소송제에 특유한 규정으로서, 원고는 집단소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주로 누가 피고 대리인이 되고 누가 원고측 대리인이 되는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공익성·복잡성·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법 제5조 제1항). 법률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충분한 피고회사 입장에서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집단소송은 원고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미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벌이는 소송인데 패소의 위험부담이 있고(패소시 피고측 변호사비용부담), 승소시에도 집행가능성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소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비용이나 위험을 감당할 규모를 가진 변호사사무실들은 대부분 기업과의 관계로 인해 원고측을 대리하기 어려우며, 원고측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도 원칙적으로는 3년간 3건까지만 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원고측을 대리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도 증거개시제도가 있나?

한국에서 당사자에게 각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식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개시(discovery)제도는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 당사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변론전절차를 통칭한다.

특히 증권사건의 경우 사건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입증이 그만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해당 증거가 피고회사에 편재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증거개시제도를 통해 피고회사가 보유한 모든 서면자료, 관련증인을 본격적인 심리 이전에 조사할 수 있어 한국처럼 피고회사가 증거를 독점하기 어렵다.
증거개시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집단소송은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회사 측에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는가?

징벌적 배상이란 가해자에게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서,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2]

한국에서는 소송펀드의 활용이 가능한가?

한국에서는 소송펀드의 활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펀드란 제3자가 집단소송에 필요한 법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원고 승소시 화해 또는 판결로 얻게 되는 배상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다. 다만 원고 패소시에는 피고측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02.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참조

이러한 소송펀드는 무엇보다도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소송에 관여함으로써 소송의 남용을 가져온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소송펀드는 집단소송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소송펀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4조 제5항), 이를 위반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도 무효라고 보고 있어[3], 한국에서 소송펀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집단소송에서 성과보수약정이 가능한가?

화해나 판결에 의하며 결정된 총 배상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보수를 산정하는 성과보수 약정은 집단소송에서도 가능하다.

우리 법은 소송허가신청서에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법 제44조제3항), 법원은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 소송의 소요기간과 사안의 난이도, 승소금액·권리실행금액·구성원에 분배되는 금액, 소송대리인의 변론내용,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 및 변론에 투입한 시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규칙 제36조).

즉, 법은 소송에 투자한 시간과 시간당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정한 보수 뿐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 비율 및 승소금액도 고려하여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보수약정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며,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대부분의 소송은 성과보수약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패소자가 집단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나?

한국의 소송비용제도는 우선 원고가 청구액에 비례하는 인지대를 선납하게 하고 나중에는 패소자에게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도 원고의 남소여부와 상관없이 원고 패소 시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3] 춘천지방법원 2008. 6. 22. 선고 2006가합319 판결

된다. 예컨대 피고의 불법행위는 입증했지만 손해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하여 원고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패소의 경우에도 남소가 아닌 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주지 않는 영미의 경우와 대비된다.

당사자간의 화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으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화해 등의 효력 발생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법 제35조 제1항).
화해 등은 모두 본질적으로 법원의 관여 없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합의만으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대표당사자와 피고 등이 담합을 하여 구성원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종료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감독방법으로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최초의 집단소송은 어떤 소송이었나?

최초의 집단소송은 진성티이씨 사건으로, 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손실을 재무제표에서 누락시켜 주가폭락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2009년 4월에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10년 2월 소송허가 결정을 내렸으나 위 사건은 본안소송까지 진행되지는 않았고 회사 측과 주주간의 화해로 종결되었다.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어떤 사건에서 제기되었는가?

한국에서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7건의 집단소송 중 2건의 소송이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되었다.

2010년 1월 7일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10호" 투자자들은 ELS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최초의 증권집단소송이자 2009년 2월 발효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따른 첫 증권집단소송이기도 하다.

또한 2012년 3월 2일에는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호"와 관련하여 도이치뱅크(Deutsche Bank)를 상대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는가?

지금까지 제기된 집단소송은 다음과 같다.

소제기일	사안	원고 대리인
2009. 04. 13.	진성티이씨 건 (KIKO관련 분식회계)	아이엔에스
2010. 01. 07.	한화스마트10 건 (ELS 종가조작)	한누리
2011. 10. 13.	씨모텍 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한누리
2012. 03. 02.	한투289 건 (ELS 종가조작)	한누리
2013. 10. 08.	GS건설 건 (분식회계)	한누리
2013. 12. 01.	진매트릭스 건 (시세조종)	율, 건진
2014. 06. 10.	동양 회사채 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정률

당초 집단소송제의 도입 당시 분식회계가 집중적인 소송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금까지 제기된 집단소송의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분식회계 2건, 시세조종 1건, ELS종가조작과 관련한 부정거래 2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2건으로 나타난다. 총 7건 중 6건이 2010년 이후에 제기되는 등 집단소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집단소송제가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가?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에 따른 집단적 피해가 증가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피해자들의 결집이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에서 집단소송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이 확산될 전망이다.

- 기업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 등 개인정보 침해
- 기업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 아파트 하자
- 환경

한편 한국 정부는 현재 증권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기업의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격과 입찰 담합 등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처벌받을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금융관련 집단소송도 상장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국의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청구원인

미국은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청구원인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집단적 피해가 야기된 사건이면 어떠한 종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이든 관계없다. 반면 한국은 법 제3조에 열거된 특정한 손해배상청구소송만 집단소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소송대리인 자격

미국은 소송관여 횟수에 따른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한국은 원고측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한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의 출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증거개시제도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걸어 놓은 후 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해서 회사측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가 쉽지만 한국은 검찰이나 금감위의 조사발표에 의존하여 소송의 단서를 찾게 된다.

소송비용

미국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하더라도 악의적 소송만 아니면 회사측의 소송비용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의의 소송이라도 패소하면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는 회사측 소송비용을 물어 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인지대가 소송액수에 관계 없이 소액인데 우리나라는 액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상당한 액수의 인지대를 부담해야 한다.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 길 27, 431 호 (서초동, 1685-8 G-Five Central Plaza)
전 화 : 02-537-9500(대표) 팩 스 : 02-564-9889(대표)
홈페이지 : www.hannurilaw.co.kr
이 메 일 : hannuri@hannurilaw.co.kr